

1880년대 漢城開棧을 둘러싼 韓·中 갈등과 그 의미*

문 명 기**

목차

서론

- I. 한성개잔과 <麻浦章程>의 성립
- II. 漢城撤棧을 둘러싼 갈등
- III. 漢城開棧의 ‘反作用’: 연쇄방화 사건의 발생

결론

서론

전통시대의 한국과 중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조공체제(tributary system)로 표현되는 국제질서를 유지해왔으나 19세기 중반 이후 개별 국가의 주권을 바탕으로 한 조약체제(treaty system)로 전환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도 청조는 일본을 포함한 서구 열강에 대해서는 (불평등하나마) 근대적 조약관계를 맺어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EAHF-2007-2실07-단013).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온 반면, 조선에 대해서는 1882년에 체결된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하 <장정>으로 칭함)을 통해 전통적인 조공관계를 강요함으로써 대외인식과 대외관계에서 상호 모순되는 양면성(兩面性)을 보여 왔다.¹⁾ 이러한 양면성을 지니고 시작된 근대 한중관계는 청일전쟁의 종결과 더불어 전통적 조공관계를 청산하고 1899년 <韓淸通商條約>(이하 <조약>으로 칭함)을 통해 새로운 근대적 조약관계를 바탕으로 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과정이 19세기말~20세기 초 근대 한중관계의 주된 내용이고 많은 연구역시 이러한 변화의 전체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었던 것 같다.

다만 1899년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한 ‘사대’ 관계에서 ‘대등’ 관계로의 ‘급격한 전환’이라는 설명 방식에 대해 필자는 의문을 가져왔다. 예컨대 최근 번역된 한 연구는 시모노세키조약 체결 이래의 한·중 관계의 변화를 ‘중화로부터의 탈중심화’로 규정하면서 조선사회가 1895년을 계기로 중국을 문명개화에 뒤쳐진 반면교사로 ‘강등’시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 일단 1895년 전후의 조선사회의 중국문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그렇게 급격한 전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³⁾ 설사 급격한 전변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전변의 역사적 전제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급격한 전변’ 주장의 근거가 박약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1) 권혁수, 『19세기말 한중관계사 연구』, 백산자료원, 2000, 340-345쪽.

2) 앙드레 슈미드 지음, 정여울 옮김,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휴머니스트, 2007, 67-70쪽 및 159-168쪽.

3) 예컨대 유교적 보편주의에 입각하면서 동시에 중국문명의 우월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한 조선 유림 세력의 사회적 영향력은 식민지시대에 들어서서도 예상외로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윤해동, 『지배와 자치 - 식민지기 촌락의 삼국면구조』, 역사비평사, 2006, 40쪽). 다만 이 점은 본고의 논지를 넘어서는 문제이므로 다른 기회에 보다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한·중 관계의 변화상을 포착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로서, <장정>에 규정된 이래 한·중 외교 분쟁의 주요 현안 중 하나였고 <조약> 체결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漢城開棧·撤棧’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⁴⁾ 주지하듯이 <장정> 제4조에서 중국은 조선 商民에게 北京에서의 상업 행위(“開設行棧”)를, 조선은 중국 상민에게 漢城(과 楊花津)에서의 상업 행위를 허용하고 이를 두 국가 간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조항, 즉 최혜국대우 조항의 예외 사항(“專條”)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중국 상민의 한성에서의 상업 행위는 후술하듯이 다양한 정치적·외교적·경제적 분쟁을 야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19세기 말에 한정해 보면 일국의 首都를 외국 상인의 거주·교역에 개방한 사례는 (적어도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장정>을 제외하고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한성개장 문제는 <장정>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을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소재라고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한성개장이 결정되게 된 경위와 그 구체적 실

4) 본고의 주제와 유사한 내용을 다룬 논문으로는 한규무,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1882)과 淸-朝鮮間 宗屬關係의 明文化,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下)』, 一潮閣, 1994; 구선희, 『한국근대 대청정책사 연구』, 해안, 1999; 김정기, 『1890년 서울상인의 撤市同盟罷業과 示威투쟁』, 『한국사연구』 67, 1989 및 秋月望, 『朝中間の三國貿易章程の締結経緯』, 『朝鮮學報』 115, 1991; 崔英蘭, 『近代朝鮮の外交政策の一側面-「朝貢關係」と「條約關係」-』, 『朝鮮學報』 184, 2002; 酒井裕美, 『甲申政變以前<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の運用實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3, 2005 등이 있다. 한 익명의 심사자의 소중한 제안대로 이들 연구의 대체적인 결론, 즉 1882년 <장정> 체결 이후 1894년까지 청조의 조선에 대한 강압적인 내정간섭으로 인해 조선 내에서 반청의식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었다는 기존의 주장과 본고의 주장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필자는 후술하듯이 <마포장정>과 한성개장·철간 문제를 통해 반청의식이 발현되는 양상을 상대적으로 언급이 덜 된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본고의 독창성 여부에 대한 해당 심사자의 질의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바이며, 이후 다른 논고를 통해 문제의식을 보다 세심하게 다듬어 제시하고자 한다.

행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문제, 예컨대 한성·양화진의 개방으로 파생된 <麻浦章程>의 제정 과정, 조선정부의 漢城撤棧(=開棧의 폐지) 노력과 중국의 대응, 또 華商·日商의 한성 진출로 인해 파생한 분쟁의 분석을 통해 <장정>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보다 선명히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I. 한성개잔과 <麻浦章程>의 성립

<장정> 제4조가 조선 상민의 北京 무역과 중국 상민의 漢城·楊花津 무역을 규정함으로써 양국의 수도는 상대국 商民에게 개방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인천과 한성 사이의 운송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계기도 되었다. 즉 중국 상인(이하 華商으로 칭함)의 입장에서는 인천~한성의 육로 이용보다는 인천에서 통관수속을 마친 뒤에는 중국에서 인천까지 오는 데 이용한 배를 그대로 타고 漢江을 이용해 楊花津까지 직접 도달하기를 바랐다. 다만 한강이라는 內河에 대한 航行權의 보장 여부는 <장정>에 명기되어 있지 않았고, 이는 곧 화상의 한강 진입 허용 여부에 대한 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고종21년(1884) 초 總辦朝鮮商務 陳樹棠은 산둥 상인 李明進의 범선이 인천에서 양화진으로 향하려다 억류되자 항의를 제기했다. 조선 정부로서는 <장정> 제4조에 ‘중국 상민이 조선의 양화진과 한성에 와서 行棧을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중국 상인이 범선을 끌고 한강에 진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 또 이명진의 범선이 작년에 왔을 때 다시는 한강 진입을 허용치 않겠다고 명언한 바 있다는 점, 아울러 현재 仁川海關이 범선을 억류한 것은 <장정> 제4조의

‘피차의 海關通行章程에 따른다.’는 구절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중국 상선의 한강 진입을 허용치 않았다.⁵⁾

이에 대해 진수당은 <장정> 제4조에 따라 한성개간이 이미 허용된 마당에 상선이 교역지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중국과 서양의 경우에도 외국인에 開設行棧을 허용하면서 선박의 왕래를 금지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 그리고 <장정> 제4조의 ‘피차의 海關通行章程에 따른다.’는 구절은 화물에 대한 貨稅·船鈔에 대해 적용되는 문구이지 한성·양화진에 도달하려면 배를 바꾸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중국 상선의 한강 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⁶⁾

조선정부 역시 양보할 뜻이 없었다. 署理督辦交涉通商事務 金弘集은, 해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의 상선 출입을 불허한다는 <장정>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 상선의 한강 진입을 허용할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작년에 한강을 통해 麻浦에 도달한 중국 상선은 2척 뿐이어서 예외적으로 허용했을 뿐이고, 이들에 대해서도 다시는 마포 진입을 허용치 않겠다고 명언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중국 상선 진입 불허 문제를 즉시 (진수당에) 조회하지 않은 것은 이 조치가 <장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고, 또 통상 초기에 사소한 문제까지도 조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⁷⁾

진수당 역시 물러나지 않았다. <장정> 제3조에 ‘양국 상선에 대해서는 피차의 通商口岸으로 駛入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한 점, 그리고

5) 『淸國商船의 楊花津駛入不許에 대한 抗議』(고종21년 2월 16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구한국외교문서편찬위원회 편, 『淸案』1(이하 『淸案』1로 줄임),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0, 43쪽.

6) 『淸國商船의 楊花津駛入不許에 대한 抗議』(고종21년 2월 16일), 『淸案』1, 43-44쪽.

7) 『同上淸國商船의 楊花津寄港不許에 對한 回答』(고종21년 2월 17일), 『淸案』1, 44-45쪽.

<장정>에 통상구안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開設行棧之處’는 ‘通商口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 한성·양화진 역시 통상구안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양화진에 대해서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⁸⁾ 이에 대해 민영목은 <장정> 제8조에서 조선의 通商各口의 지명을 일일이 거명하지 않은 것은 개방한 口岸이 세 곳(仁川·釜山·元山) 뿐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關卡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內地로 간주해야지 口岸이라고 칭해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 상선의 진입을 허용하여 각국이 이를 원용하는 단서를 열어둘 수 없다고 밝혀, 이 문제가 중국과 조선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역설하였다.⁹⁾

하지만 진수당은 이렇게 반박했다. 만일 <장정> 제3조의 ‘通商口岸’ 네 자 앞에 ‘이미 각국에 개방된(已開及各國)’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통상구안이 3개항으로 한정되고 따라서) 중국 상선이 한강에 진입할 수 없지만, <장정>에는 이 문구가 없으므로 적어도 華商의 경우에는 ‘專條’를 통해 무역을 허용한 지역까지 通商口岸에 포함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상선이 피차의 통상구안에 사입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華人の 通商口岸과 各國에 개방된 通商口岸’이라는 의미이며, 따라서 (專條를 통해 성립한) ‘華人の 通商口岸’인 漢城·楊花津으로의 상선 출입이 용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⁰⁾

아울러 조선정부가 우려한, 최혜국대우 적용을 통한 각국 상선에 의 한강의 개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미 각국에도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專條가 있어 均霑을 허용치 않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할 것

8) 이 진수당의 조회는 현재 남아 있지 않으나 다음에 인용할 민영목의 조복을 통해 그 개략을 재구성할 수 있다.

9) 『淸國商船의 麻浦寄港不當의 件』(고종21년 2월 21일), 『淸案』1, 51-52쪽.

10) 『淸國商船의 麻浦寄港不許에 對한 抗議』(고종21년 2월 23일), 『淸案』1, 55-56쪽.

없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華商의 화물 1,000여 건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여 한강진입을 허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¹¹⁾ 이에 민영목은 이번만은 허용하되 한 달 후에는 한강진입을 전면금지할 것임을 통보하고 있다.¹²⁾

하지만 이후에도 진수당의 한강진입 요청은 계속되었다. 진수당은 <장정> 前文에 <장정>에 규정된 권리·의무 조항이 ‘一切均霑’ 범위 밖에 있으며, 이는 專條로서 각국과는 상관없는 문제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한강진입 문제를 확정하기 위한 민영목의 <장정> 개정 희망에 대해서는 朝鮮國王이 北洋大臣과 咨商하여 결정할 일이며, 1개월의 기한을 두어 이후 한강진입을 금하겠다는 민영목의 통보에 대해서도 북양대신에 보고하겠음을 밝혔다.¹³⁾

중국 상선의 한강진입 여부를 둘러싼 진수당과 민영목의 대립은 양국 간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장정>의 내용이 각국의 ‘균점’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에서 <장정>의 부산물이었다. 즉 화상의 한강진입 허용이 중국 이외의 국가에 균점됨으로써 한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우려하는 민영목의 입장과, 중국 상선의 한강진입을 관철함으로써 화상의 한성 무역을 보장하려는 진수당의 입장이 대립한 결과였다.

그렇다면 <장정> 前文에 이 <장정>에 규정된 권리·의무 조항은 각국의 일체균점의 범위 밖에 있다는 진수당의 논리는 타당한 것일까? 중국 상선의 한강진입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高宗21년의 일이다. 하지만 조선정부는 1년 전에 체결한 바 있는 朝·英·朝·德

11) 『淸國商船의 麻浦寄港不許에 對한 抗議』(고종21년 2월 23일), 『淸案』1, 55-56쪽.

12) 『山東帆船의 漢江駛入特准과 此後不准의 件』(고종21년 3월 2일), 『淸案』1, 60쪽.

13) 『上件의 北洋大臣 批覆 受領後 再照會의 件』(고종21년 3월 6일), 『淸案』1, 60-61쪽.

條約에 대한 續約을 체결했고,¹⁴⁾ 이 續約의 제4조 제1항은 “본 조약의 시행일로부터 조선 仁川府(濟物浦)·元山·釜山 및 漢城·楊花津(또는 근방의 적당한 지점)을 개방하여 英國의 통상장으로 삼는다.”고 규정되었고,¹⁵⁾ 러시아·이탈리아와의 조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¹⁶⁾ 게다가 이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던 美國·日本 역시 최혜국조항에 의거하여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¹⁷⁾ 따라서 서구 열강의 최혜국대우 요구를 수용한 상황에서, <장정>에 명시되지 않은 한강항행권을 ‘專條’에 의거하여 중국에만 허용하더라도 결국에는 ‘균점’될 것이라는 조선정부의 우려는 현실적 근거를 가진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은 북양대신 이홍장의 批答이 조선정부에 전달되면서 점차 가다(?)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이홍장은 “한강에 화물을 적재할 만한 견고한 (조선) 民船도 없는 실정인면서 화상의 한강진입을 금하는 것은 화상의 한성무역을 금하는 것과 다름없다. <장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情理에도 맞지 않는다. 조선국왕과 협의하여 화상의 한강진입을 허용토록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批飭을 보냈고, 진수당은 이를 근거로 한강진입을 불허해온 조선정부를 보다 강하게 압박했다.¹⁸⁾ 이 때문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조선정부는 “상선의 양화진 정박에 지장이 없고 통상에도 유익할 것으로 판단하여, 200톤 이하의 선박에 대해서는 양화진 진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¹⁹⁾ 기존의 반대 입장에 비추어 갑작스런 양보인데, 진수당은 한

14) 王明星, 『韓國近代外交與中國(1861-1910)』,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 206쪽.

15) 『漢城撤棧問題ノ再起立之ニ關スル處分法ニ付意見上申』(명치28년 7월 13일), 日本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第23卷), 187쪽.

16) 이양자, 『조선에서의 원세개』, 신지서원, 2002, 95쪽.

17) 『朝清商民水陸章程 第4條 改訂 要請의 件』(고종27년 2월 2일), 『淸案』1, 653쪽.

18) 『淸商帆船의 楊花津駛入再要請』(고종21년 4월 14일), 『淸案』1, 80-81쪽.

19) 『淸商帆船二百噸以下の 楊花津到泊과 貨物査驗의 件』(고종21년 4월 14일), 『淸

술 더 떠 ‘200톤 이하’ 제한마저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마포에 해관 分關을 설치하여 상선이 (인천과 마포 중) 어느 곳에서나 査驗에 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점, 그리고 분관 설치 이전에는 화물의 하역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24시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선 스스로 화물을 하역하게 하자고도 제안하고 있다.²⁰⁾

이렇게 해서 중국 상선의 한강진입을 둘러싼 민영목과 진수당의 줄다리기는 진수당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버렸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다. 한강 항행이 허용되면서 밀무역의 폐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즉 조선정부가 한강진입을 허용한 것은 인천해관에서의 납세, 화물신고 등의 절차를 마친 중국 상선에 한해서였지만, 많은 중국 상선은 인천해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한강으로 진입했다. 또 양화진·마포에서의 査驗도 거치지 않은 채 한성으로 화물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었던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재정궁핍에 시달리던 조선정부의 세원을 잠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선정부로서도 좌시할 수 없었다. 이에 조선정부는 소위 <麻浦章程>을 통해 밀무역을 차단하고 중국 상선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했다.

조선정부는 탈세 단속을 주장한 총세무사 메릴(Merill)의 요청에 응함과 동시에 <暫定帆船前往麻浦章程>(이하 <마포장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²¹⁾ <마포장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전해지지 않지만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袁世凱와 督辦交涉通商事務 간에 왕래된 문서를 통해 그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한강 연안의 어느 곳이든 정박하여 화물을 빼돌리던 적폐를 시정하고 마포 분관에

案』1, 82쪽.

20) 『同上件의 噸數制限撤廢와 麻浦分稅關의 設置要請』(고종21년 4월 15일), 『淸案』1, 82-83쪽.

21) 『麻浦章程의 淸商에 대한 拘礙點 修整에 관한 回答』(고종26년 4월 1일), 『淸案』1, 541-542쪽.

서의 査驗과 징세를 강화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였다.

이러한 조선정부의 제안에 대해 원세개는 몇 가지 시정을 요구했다. ㉠ 상인들은 용산에서 화물을 하역하기를 바라므로 査驗과 하역을 마포로만 한정하지 말 것. ㉡ 범선 화물은 인천해관에서 査驗을 거치므로 마포에서 재차 시험할 필요가 없지만, 시험이 필요한 경우라도 건수만을 확인할 것(화물 개봉으로 생기는 피해를 없앨 것). ㉢ 시험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특별한 사고가 있거나 휴일(停工日)이 아니라면 시험을 지체하지 말 것. ㉣ 화물의 선적·하역은 沿江의 편리한 곳 어디서든 할 수 있게 할 것. ㉤ 중국·조선의 官民에게는 日曜日이 없으므로 일요일에도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것 등을 요구했다.²²⁾ 이에 대해 독관교섭통상사무 趙秉稷은 각각의 주문에 대해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²³⁾

이후 <마포장정>은 각국 公使와의 절충과²⁴⁾ 추가적인 수정,²⁵⁾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홍장의 批答을 거쳐²⁶⁾ 고종26년(1889) 11월

- 22) 『麻浦章程의 淸商에 대한 拘礙點 修整에 관한 回答』(고종26년 4월 1일), 『淸案』1, 541-542쪽 및 『麻浦章程의 淸商에 대한 拘礙點 修整에 관한 回答』(고종26년 5월 4일), 『淸案』1, 547-548쪽.
- 23) 『麻浦章程의 淸商에 대한 拘礙點 修整에 관한 回答』(고종26년 5월 4일), 『淸案』1, 547-548쪽.
- 24) 『麻浦章程에 대해 日本公使酌增底稿의 送交 및 廠房·碼頭 設立과 實施에 관한 札函』(고종26년 7월 9일), 『淸案』1, 574-575쪽.
- 25) 『麻浦章程 施行에 관한 照會』(고종26년 7월 15일), 『淸案』1, 577-578쪽; 『麻浦章程 實施期日에 관한 回答』(고종26년 7월 15일), 『淸案』1, 579-580쪽; 『改繕한 麻浦章程의 妥善과 實施日期 訂定에 관한 回答』(고종26년 9월 21일), 『淸案』1, 614쪽; 『麻浦章程 實施期日 佈諭에 관한 照會』(고종26년 9월 24일), 『淸案』1, 615-616쪽; 『麻浦章程 實施期日에 관한 回答』(고종26년 10월 11일), 『淸案』1, 624쪽.
- 26) 『淸商들에게 麻浦章程을 布告·遵守케 함에 관한 照會』(고종26년 10월 28일), 632쪽을 통해 원세개는 이홍장의 <마포장정>의 실시에 대한 확답을 얻었고, 이를 중국의 北洋 각 관도와 강해관도 및 화상에게 알려 준수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²⁷⁾ 이로써 한성개잔으로 촉발된 중국 상선의 한강진입을 둘러싼 양국의 분쟁은 각국 범선의 한강진입을 허용하되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마포장정>의 성립을 통해 일단 매듭지어지게 된다. 이는 <장정>에 專條로서 규정된 한성개잔이 각국에도 균점됨에 따라 외국 선박의 한강진입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던 조선 정부의 현실인식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지만, 首都에서의 각국 상인의 상행위를 허용한다는, 전례 없는 조항이 <장정>에 규정된 데 따른 불가피한 귀결에 다른 아니었다. 따라서 조선정부로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성개잔’의 철회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II. 漢城撤棧을 둘러싼 갈등

<장정>의 한성개잔 규정에 따라 화상은 한성에서 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은 조선정부로 하여금 漢城開棧을 재고하게끔 만들었다. 이 때 한성철잔에 깊이 관여한 것이 外衙門 督辦 金允植이었는데, 고종22년에 김윤식이 작성한

27) 하지만 <마포장정>의 실시는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게 되는데, 그 주된 원인은 원세개의 <마포장정>에 대한 최종결정이 계속해서 늦어졌기 때문이었던 듯하다. 『麻浦章程 實施日期의 確示에 관한 札函』(고종26년 9월 7일), 『清案』1, 601쪽에 따르면 조선정부가 마포로 인원을 파견하여 이주시킨 지 6-7개월이 지났고 <마포장정>에 관한 협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는데도 아직 확실한 ‘准覆’을 받지 못하여 시행 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파견 인원을 그냥 놀리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원세개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세개는 <마포장정>의 각 조항이 타당하다고 했던 기존의 평가를 뒤집어 새로이 2개항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포장정>의 타결을 한층 더 지연시키고 있다(『麻浦章程 實施日期 商詢件의 詳細示明 要請』(고종26년 9월 9일), 『清案』1, 603쪽; 『麻浦章程 妥訂에 있어 章內 2個條의 更訂에 관한 回答』(고종26년 9월 17일), 『清案』1, 610-611쪽; 『麻浦章程 內 2個條의 改繕送達에 관한 札函』(고종26년 9월 19일), 『清案』1, 612쪽 참조).

『漢城開棧私議』를 통해 문제의 실상을 살필 수 있다.

우선 한성개간의 경위와 문제의 소재에 대해 김윤식은 “화상의 한성개간을 결정한 것은 一家之誼를 돈독히 하고 外人之侮를 막기 위해 서였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우리나라의 商務는 활발하지 못하여 (淸國의) 富商大賈들은 오지 않았고, 東來하는 자들은 모두 영세한 경영을 통해 一時之利를 얻고자 하는 자들뿐이었다. 이들이 어찌 (청조의 조선에 대한) ‘보호·유지’의 대의를 알겠는가. (이익을) 얻으면 살고 잃으면 죽는 상황에서는 寬厚相恕의 도가 사라지는 법이다. 또한 (화상의) 마음속에는 (조선을) 輕侮하는 바가 있어 걸핏하면 소란을 일으키니 官吏 이하 모든 이가 소원해지게 되었고, 외국인들이 그 간극을 노리게 된 것이다. 이는 大局에 관계된 것이니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라고 하여 본래 조선의 ‘보호·유지’를 위해 제정된 <장정>이 적지 않은 폐단을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²⁸⁾

폐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덟 가지 해악(八害)’로 정리하고 있다.²⁹⁾ 이를 요약하면 ㉠ 한성개간으로 인한 조선상인, 특히 六矣塵의 상권 위축과 ㉡ 상권 위축으로 인한 조선정부의 재정 악화 ㉢ 잡거로 인한 치안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김윤식은 또 撤棧의 가능성에 대해서 “傳相(=이홍장)은 조선의 일을 논할 때마다 걱정하는 빛이 역력했다고 한다.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 改約하자고 하면 흔쾌히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물며 <장정> 제8조에 ‘이후 增損해야 할 점이 있을 경우 수시로 협의하여 請旨定奪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는 바로 현재와 같은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하여 한성철잔을 낙관했다. 다만 “漢城開棧을 개정하지 않으면 가까운 장

28) 金允植, 『漢城開棧私議』, 『雲養集』(卷7),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金允植全集』, 亞細亞文化社, 1980, 464-465쪽.

29) 金允植, 『漢城開棧私議』, 467-469쪽.

래에 각국 상점이 밀려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들을 (한성 밖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워지고 改約도 훨씬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³⁰⁾ 이러한 김윤식의 예측은 불행하게도 현실화된다(후술).

한성개잔에 대해 조선정부는 사실 <장정> 체결 이전부터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 <장정> 체결을 위해 天津에 있던 어윤중은 <장정> 제4조에 대해 “本邦(=조선)은 백성들이 가난하여 (開棧을 허용하게 되면) 도성의 상점들은 失利로 인해 정부를 원망할 것이다. 또 양화진은 개항장이 되어 開棧하게 될 거라면 굳이 ‘內地採辦’이라고 指名할 필요가 있겠는가. 양국 상민의 상호왕래를 허락받았으니 (조선을) 內地처럼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深感하지만, 외국이 援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일본인들이 대구와 함흥 문제로 (조선정부를) 強迫한지 오래 된 점도 있는지라 우려되는 바이다.”라고 했다. 어윤중은 이미 한성개잔 조항이 열국에 개방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³¹⁾

이에 대해 중국측 협상대표인 天津海關道 周馥은 “한성개잔이 빈민에 누를 끼친다는 문제에 관해서는, 장차 변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다. (중략) 한성개잔을 제외한다면 귀국(상민)의 북경무역 조항의 삭제를 원하는 것인가. 또 우리는 귀국의 북경 교역을 허용하면서도 타국이 援用할 걱정을 하지 않는데, 귀국은 어째서 걱정하는가.”라고 하여 한성개잔이 열강에 의해 원용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³²⁾

다만 그렇다고 이를 조선정부의 일방적인 양보라고 보기에는 석

30) 金允植, 『漢城開棧私議』, 468-470쪽.

31) 『照錄朝鮮侍講魚允中節略』,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清季中日韓關係史料』 (이하 『關係史料』로 약칭) 제3권, 경인문화사(영인본), 1989, 983-984쪽.

32) 『照錄津海關周道·候選馬道覆魚允中節略』, 『關係史料』 제3권, 985쪽.

연치 않은 점도 있다. 조선정부가 <장정>을 서둘러 체결하려 한 데에는 중국의 군사력에 의존한 對日 견제와 열국간의 세력균형이라는 정치적 목적과 아울러 고종의 여러 개혁을 뒷받침할 재정능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조선 상민의 북경무역, 특히 인삼무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³³⁾ 따라서 조선 상민의 북경무역을 철회하겠다는 청조의 반론은 효과적이었고, 인삼무역을 확대하려던 조선정부의 입장에서는 ‘호혜’의 차원에서 한성개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³⁴⁾

33) <장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조선측 대표자에 김윤식과 더불어 어윤중(1848~1896)이 활약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어윤중은 1881년 일본에 파견된 紳士遊覽團의 일원으로서 大藏省의 직제와 사무, 그리고 (세입세출이나 지폐·국채·은행·조세·정부재산 등을 포함한) 일본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고, 그는 시찰을 마치고 『日本大藏省視察記』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즉 재정부문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던 어윤중으로 하여금 청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해관·통상 등의 재정·경제 부문을 담당케 한 것이다. 실제로 고종 자신도 김윤식과 어윤중이 친진에 파견되기 전에 이들을 소견한 자리에서 특별한 당부를 행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北道互市’는 고종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다(吳晗 編, 『朝鮮王朝實錄抄 中國史料』VII, 경인문화사(영인본), 1989, 『高宗19年壬午2月17日』, 5265-5266쪽).

34) 필자가 보기에 조선이 <장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배경에는 조선정부의 재정 확충(또는 비용 절감)이라는 문제가 의외로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실질적인 통상교섭을 주도했던 어윤중은 청조측 대표인 張樹聲과 周馥에 대해 1) 北道 開市의 효과 및 商民 供饋의 폐지, 2) 派使駐京의 신설, 3) 海禁의 철폐 및 통상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선 1)의 北道(義州·會寧·慶原) 開市에 있어서 청조의 무역감독관인 章京의 인출 하에 350여 명의 상인과 670여 필의 牛馬를 동반했고, 청조 관원과 상인의 供饋費 일체를 조선측에서 부담함과 아울러 수반되는 우마의 芻糧까지도 지급하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개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兩市 비용이 米 9,200석과 銅錢 90,000량 전후, 單市 비용이 米 7,200석과 銅錢 50,000량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또 2) 年貢·賀使·進奏 등의 事大使行을 철폐하고 파사주경하겠다는 제안의 배후에는 節使와 別使의 사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조선정부의 사정이 놓여 있었다. 어윤중은 고종19년 4월 <장정> 교섭 당시 조선정부의 1년 세입은 30萬兩 정도에 불과한 데 반해, 함경도 세입의 절반은 호시 비용의 충당에, 평안·황해도 세입은 양국 사신 왕래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에 소모되어 탁지부의 수입이 되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事大儀節은 과거와 같이 행하되 사행이 왕래하는 것을 막고 북경에 주재하여 경비

어쨌든 어윤중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한성개잔은 <장정> 제 4조에 명문화되었고, 조선정부는 한성개잔을 華商에게만 배타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외교적 과제를 짊어지게 되었다. 이 문제는 <장정> 체결 후 얼마 되지 않아 조선정부의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즉 高宗19년에 맺은 朝·英/朝·德條約이 두 나라 議會의 비준을 얻지 못해 재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재협상의 주요 議題는 바로 通商과 稅則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물론 한성개잔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장정>의 專條 조항을 내세운 조선정부의 주장은 영국·독일을 설득할 수 없었고 자칫 한성이 열국 모두에게 개방될 위기에 처하자 閔泳穆은 天津海關道 周馥에게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민영목은 “작년에 問議官 李祖淵과 魚允中이 천진에서 회담할 때 漢城開棧이 관철될 경우 (한성의) ‘貧民’의 경제적 이익을 침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래에 變通·辦理하겠다고는 말이 있었음”을

를 절감케 한다는 아이디어였던 것이다. 또 3) 조선정부가 청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통상 교섭을 행하게 된 데에는 朝日修好條規 당시 일본과 체결한 海關稅則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의도도 강했다. 일본은 개항 이래 각 통상구안에서 免稅로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고 따라서 면세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청조와의 새로운 통상장정의 제정을 통해 일본을 압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김종원,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에 대하여』, 『역사학보』 제32집, 134-142쪽). 이렇게 보면 <장정> 교섭 시에 조선정부가 제기했던 북시혁파, 派使駐京, 통상화대는 모두 재정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연관되어 있었다. 기존 연구는 대체로 정치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중시해왔고 필자 역시 그 점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고종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김정기, 『대원군 남치와 반청의식의 형성(1882~1894)』, 『한국사론』 19, 1988, 482-483쪽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한 대원군의 정계 복귀에는 통리기무아문의 설치, 신사유람단의 일본 파견, 별기군의 창설, 군기 제조를 위한 유학생의 청국 파견 등을 위한 각종 경비가 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보았는데, 임오군란 이후에도 고종은 여전히 새로운 재원을 절실히 필요했으리라는 가정도 성립할 수 있다. <장정>의 재정사적 함의에 관한 필자의 문제의식을 정리한 것이 문명기, 『재정사의 각도에서 다시 보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 『역사문화연구』 제30집, 2008이다.

상기시키면서, 華商의 한성개잔을 허용한 것은 본래 (중국을 제외한) 外人의 침투를 막기 위함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장정> 제4조의 변경을 요청했다.³⁵⁾

이에 대한 청조나 주복의 반응이 어땠는가는 불분명하다. 다만 이 흥장은 조선정부와 續約을 체결하고 돌아온 영국 駐淸公使 파크스(Parks)를 만나 續約 문제를 언급하면서, “通商 章程과 稅則이 작년의 原約에 비해 크게 개정되었다. 다만 본래 통상·세칙 등의 일은 조선이 독자적으로 결정(專政)하는 것이지 중국과 무관한 것이다.”고 하여 청조가 추구하는 ‘屬邦’ 규정을 조선정부가 준수했는지의 여부에만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미루어,³⁶⁾ 한성개잔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조선정부의 입장에서 한성개잔이 열국에 개방된다는 사실은 중차대한 문제였다. 1895년까지 조선정부는 청조에 즐기차게 한성철잔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자. 우선 김윤식은 고종22년 12월 한성철잔을 원세개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김윤식은 한성개잔 이후 각국의 均霑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한성철잔을 받아들일 경우 각국 역시 <장정> 제4조를 원용하지 않겠다.’는 善後續條와 <장정> 내용을 增損할 수 있다는 <장정> 제8조를 근거로 한성철잔을 중국이 우선 단행하여 화상을 사대문 밖으로 이주시키기를 요청한 것이다.³⁷⁾

이에 대해 원세개는 總理衙門 및 北洋大臣과의 협의를 거쳐³⁸⁾ 한

35) 『各國通商章程 및 稅則改正에 關한 回答』(고종20년 11월), 『淸案』1, 11쪽.

36) 『朝鮮通商章程二十四條抄件已收到』(署北洋大臣李鴻章函)(光緒9년11월9일), 『關係史料』제3권, 1227쪽.

37) 『淸商의 漢城開棧撤舖와 龍山·楊花津 等地 開棧 要請』(고종22년 12월 14일), 『淸案』1, 285쪽;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 韓擬將漢城華商行棧移赴龍山口』(光緒12년1월17일), 『關係史料』제4권, 2028쪽.

성 소재 화상 行棧의 용산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³⁹⁾ 또한 그 후속조치로서 화상의 용산 이주를 담당할 龍山商務委員도 임명되었다.⁴⁰⁾ 아울러 용산으로 이주할 화상의 房價 지급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고종23년 가을 조선 外衙門은 원세개에게 曹平銀 1,222兩의 방가를 보낸 것이다.⁴¹⁾

하지만 이후 화상 行棧의 용산 이전은 화상들의 비협조와⁴²⁾ 원세개의 소극적 태도⁴³⁾ 열국 상호간의 견제⁴⁴⁾ 등으로 인해 진척이 없었고,⁴⁵⁾ 조선정부는 재차 화상의 용산 이전을 요청하게 된다. 趙秉植은 한성개잔으로 인해 한성 시민들이 생업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방가를 지급했음에도 1년이 넘도록 華棧이 철폐되지 않았고 日商의

38) 『淸商의 漢城開棧撤舖에 대한 回答』(고종22년 12월 19일), 『淸案』1, 286-287쪽;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 韓擬將漢城華商行棧移赴龍山口』(光緒12년1월17일), 『關係史料』제4권, 2028쪽.

39) 『漢城華商行棧의 龍山移設에 대한 同意』(고종23년 2월 26일), 『淸案』1, 302쪽.

40) 『龍山商務委員 陳同書 任命 通告』(고종23년 10월 28일), 『淸案』1, 331쪽.

41) 『淸商 棧房 價錢의 暫時 外署存置에 관한 照會』(고종25년 12월 11일), 『淸案』1, 509쪽. 하지만 원세개는 여러 이유를 대면서 이미 지급된 방가를 외아문에 돌려주려 했고, 외아문은 방가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淸商 棧房 價錢의 外署存置 未便 回答』(고종25년 12월 17일), 『淸案』1, 511쪽).

42) 적어도 이 시점에서 원세개는 이흥장의 동의도 얻었고 본인 역시 철잔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다만 화상들이 방가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철잔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당시 한성 시내 화상의 규모가 13-4호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철잔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무산된 것이다(『日淸商民撤棧ニ關スル爾後ノ現況具申ノ件』, 日本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第23卷), 171쪽).

43) 이양자, 『조선에서의 원세개』, 97쪽.

44) 『淸商行棧의 龍山遷移 再要請』(고종24년 9월 24일), 『淸案』1, 384쪽.

45) 하지만 원세개가 이흥장에 행한 보고에 따르면 고종22년 12월 당시 한성철잔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일본상인의 이전 비용을 조선정부가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고종22년 당시 화상의 5배 규모에 달했던 ‘倭商’의 이전비용을 조달할 수 없었던 조선정부의 재정적 무능으로 인해 수년을 지체한 것이라고 보았다(『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 袁世凱稟報朝鮮閉市定形』(光緒16년2월17일), 『關係史料』제5권, 2734-2736쪽).

행잔 개설이 잇따르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때문에 “화상은 일본 상점의 개설을 이유로 철잔하지 않고 日商은 다시 화상을 핑계로 철잔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서, 화상의 철잔이 없다면 다른 외국 상인들의 핑계를 막을 도리가 없으므로 중국이 앞장서 주기를 호소했다.⁴⁶⁾

이렇게 이미 한성에 진출한 화상·일상이 급증한 상황에서 한성철잔은 더욱 곤란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물론 조선정부는 외국 상인의 증가를 막으려는 시도로서 외국인에 토지와 가옥의 사사로운 매매를 불허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즉각 원세개의 반발에 직면했다. 원세개는 화상의 용산 이전은 당장의 일이 아니고 또 화상이 토지·가옥을 구입한다 해도 이전 시에는 원가로 환매할 터이니 부동산 매각 금지를 완화하라고 요구해왔다.⁴⁷⁾

이러한 한성개잔의 유지와 철폐를 둘러싼 조선정부(및 한성상인)와 원세개(및 화상)간의 대립이 심화되던 고종27년(1890) 1월 화상·일상의 상권 잠식으로 인해 실리를 거둬하던 한성 시내 상인들은 統理衙門 앞에 집결하여 華商·日商의 철잔을 요구하면서 전면적인 철시에 돌입했다.⁴⁸⁾ 이 때 상인들이 ‘各店各商都所’의 명의로 시내 곳곳에 붙인 通諭에는 한성 상인들이 단순히 생업에만 몰두하는 존재가 아니라 ‘上奉國役’하는 존재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 상인들의 상점개설로 인해 ‘基業’이 파괴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외국상인을 인천으로 돌려보내라고 주장했다.⁴⁹⁾ 이에 대해 外衙門은 改約이 용이

46) 『淸商行棧의 龍山遷移 再要請』(고종24년 9월 24일), 『淸案』1, 385쪽.

47) 『淸商行棧의 龍山遷移中止에 關한 照會』(고종24년 9월 21일), 『淸案』1, 395쪽.

48) 『京城城內ノ韓商政府ニ日淸兩國商民ノ撤棧ヲ迫リ督辦ヨリ追テ沙汰スベク面諭中ナル旨報告ノ件』(명치23년 1월 30일), 『日本外交文書』(第23卷), 159-160쪽.

49) 『通諭』, 『日本外交文書』(第23卷), 161쪽.

한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산을 종용했지만 상인들은 철시를 멈추지 않았다.⁵⁰⁾

뿐만 아니라 한성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규모의 負商들이 入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들이 성내에 진입하면 (당시 閔氏 일파와 大院君의 대립과 연계하여) 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百出’하게 된다.⁵¹⁾ 상황이 급박해지자 外衙門을 비롯한 조선정부의 관료들은 원세개에 협조를 요청했지만,⁵²⁾ 원세개는 조선정부가 시민의 強迫에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겁에 질려 철잔을 요청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속히 搔民을 해산한 후 절차를 밟아 철잔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맞섰다.⁵³⁾

이에 조선정부는 원세개를 거치지 않고 이홍장과 직접 담판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⁵⁴⁾ 한성 상인들에 대해서는 20일 후에 철잔 문제

50) 『京城城內ノ韓商政府ニ日清兩國商民ノ撤棧ヲ迫リ督辦ヨリ追テ沙汰スベク面諭中ナル旨報告ノ件』(명치23년 1월 30일), 『日本外交文書』(第23卷), 160쪽.

51) 『督辦ハ以後二十日間以内ニ日清兩國商民ノ撤棧ノ回答ヲ約束セル商民一同納得退散二日ヨリ開店セル旨具申ノ件』(명치23년 2월 2일), 『日本外交文書』(第23卷), 164쪽.

52) 『督辦ハ以後二十日間以内ニ日清兩國商民ノ撤棧ノ回答ヲ約束セル商民一同納得退散二日ヨリ開店セル旨具申ノ件』(명치23년 2월 2일), 『日本外交文書』(第23卷), 165쪽.

53) 『督辦ハ以後二十日間以内ニ日清兩國商民ノ撤棧ノ回答ヲ約束セル商民一同納得退散二日ヨリ開店セル旨具申ノ件』(명치23년 2월 2일), 『日本外交文書』(第23卷), 166쪽. 원세개는 이번 철시를 한성철잔을 관철하려는 조선정부와 한성 大商들의 결탁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 袁世凱稟報朝鮮閉市定形』(光緒16년2월17일), 『關係史料』제5권, 2734-2736쪽).

54) 테니 지음, 신복룡·최수근 역주, 『칭한론(외)』(한말 외국인 기록8), 집문당, 1999, 124쪽. 이러한 조선정부의 결정의 배경과 관련하여 여러 소문이 당시 외교가에 돌았는데, 원세개의 ‘억압정력’을 혐오하는 조선의 대신들이라 하더라도 원세개를 배제하고 직접 청조 당국과 교섭하려는 발상을 하게 된 데에는 배후 세력의 선동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 배후세력으로서의 미국인 테니와 러시아 공사 웨베르가 거론되고 있다(『朝鮮政府直接ニ清政府ニ撤棧ヲ申入ルハ背後ノ煽動アルト想像セラルルニ付警戒スベキ旨申進ノ件』(명치23년 2월

의 해결책을 제시할 테니 철시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⁵⁵⁾ 조선정부의 조치에 대해 日本公使館은 특사 파견과 이홍장 면담이 이루어지더라도 이홍장 역시 총리아문에 보고해야 하고, 또 총리아문 역시 황제의 재가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가 한성 상인들에게 20일이라고 기한을 못박은 것은 현명치 못한 처사라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인들이 더욱 과격할 수단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 인천항으로 군함을 파견해줄 것을 본국 외무성에 요청해놓고 있다.⁵⁶⁾ 뿐만 아니라 원세개를 배제하려는 태도를 조선정부가 보였다는 점은 원세개 부임 이래의 조선정부의 태도로 미루어보더라도 이례적인데, 조선정부는 왜 이렇게 한성철잔 문제에 ‘집착’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한 金嘉鎭의 발언은 시사적이다. 이번 사태는 조선 정부에 있어서 한성철잔 그 자체를 넘어선 문제라는 것이다. 즉 한성철잔이 이루어져 용산으로 외국상인이 이전한다 하더라도 용산은 한성 시내에서 불과 10리 거리에 있기 때문에 城內의 조선상인으로서

8일), 『日本外交文書』(第23卷), 168-169쪽). 특히 데니와 관련해서는 소문이 꽤 구체적이었는데, 데니가 미국에서 외채를 모집하고 한규설은 육의전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고 휴업을 강행하여 실력 행사를 함으로써 철잔에 동의하게끔 한다는 내용이었다(『日清商民ノ撤棧確約期限經過後效發ノ懸念アル紛擾防止ノ爲更ニ軍艦一隻仁川へ回航方意見具申ノ件』(명치23년 2월4일), 『日本外交文書』(第23卷), 166쪽). 반면 당사자인 데니 자신의 기록을 통해 볼 때 데니가 이 문제에 개입한 흔적은 발견하기 힘들다. 데니는 한성 상인들의 파업에 대해 지극히 평심한 어조로 사실 관계를 서술할 뿐이었고, 이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청한론(외)』, 123-124쪽). 원세개의 숙료인 당소의 역시 이번 폐시는 과거의 폐시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조선정부와 육의전 상인의 결탁을 의심하고 있었다(『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 分析韓閉市真相及其利害關係』(光緒16년2월17일), 『關係史料』제5권, 2736-2737쪽).

55) 『日清商民ノ撤棧確約期限經過後效發ノ懸念アル紛擾防止ノ爲更ニ軍艦一隻仁川へ回航方意見具申ノ件』(명치23년 2월 4일), 『日本外交文書』(第23卷), 167-168쪽.

56) 『日清商民ノ撤棧確約期限經過後效發ノ懸念アル紛擾防止ノ爲更ニ軍艦一隻仁川へ回航方意見具申ノ件』(명치23년 2월 4일), 『日本外交文書』(第23卷), 168쪽.

청·일 양국 상인과 거래하던 자들은 모두 용산에 가서 거래할 수 있고, 또 잡화 판매의 주도권이 일시적으로 조선상인의 손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외국 상인은 內地行商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한성 시내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⁷⁾ 또한 현재 화상만으로도 漢城의 상권이 크게 위축된 상황인데 이후 외국상인이 계속 한성에 거주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명확한 것이고, 따라서 외국 상인의 城外 이전은 민심의 歸向이기도 하고 정부가 소망하는 바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철잔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3년 내에 어떠한 政變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院君黨’이 한성철잔을 정치문제화하여 재기를 노린다면 현재 원세개와 연관된 것으로 간주되던 ‘閔黨’에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⁵⁸⁾ 실제로 대원군은 이번 사태가 임오군란 같은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⁵⁹⁾ 때문에 원세개의 철잔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로서는 철잔을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고,⁶⁰⁾ 결국에는 외아문 主事 邊錫運과 金明圭를 問議官으로 삼아 친진에 파견하기에 이른다.⁶¹⁾ 邊·金은 고종의

57) 『京城撤棧ノ難キニ拘ラズ拋棄セザル理由ニ付金嘉鎭ノ談話報告ノ件』(명치23년 2월 25일), 『日本外交文書』(第23卷), 176쪽.

58) 『京城撤棧ノ難キニ拘ラズ拋棄セザル理由ニ付金嘉鎭ノ談話報告ノ件』(명치23년 2월 25일), 『日本外交文書』(第23卷), 177쪽.

59) 『日清商民ノ撤棧確約期限經過後效發ノ懸念アル紛擾防止ノ爲更ニ軍艦一隻仁川へ回航方意見具申ノ件』(명치23년 2월 4일), 『日本外交文書』(第23卷), 167-168쪽.

60) 仁川在勤 林 副領事の 보고에 따르면 조선정부는 철잔이 결정되더라도 이를 실행할 재정적 여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조선정부는 작년 3만원을 일본제일국립은행으로부터 빌렸고 그 외에도 외채 모집을 일본 공사에 여러 차례 의뢰한 바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성철잔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일본정부는 판단하고 있었다(『撤棧ニ關シ邊錫運赴津竝ニ韓政府財狀報告ノ件』(명치23년 2월 26일), 『日本外交文書』(第23卷), 178-179쪽).

61) 『撤棧ニ關シ邊錫運赴津竝ニ韓政府財狀報告ノ件』(명치23년 2월 26일), 『日本外交文書』(第23卷), 178쪽.

친서를 이홍장에 제시했다. 그 내용은 우선 <장정> 제4조가 英·獨·日을 비롯한 각국과의 조약에서 최혜국대우를 적용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諸國이 조약 협상 시 <장정>을 구실로 삼았기에” 한성개잔의 ‘일체균점’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함으로써 한성철잔 통과와 원인이 <장정> 자체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어서 고종은 “서양·일본과 맺은 조약에 관해서는 貴大臣에 자문하여 轉奏케 한 바 있다. 귀대신은 교섭을 통해 대국을 통찰하여 諸國에 (일체균점을) 허용하였으니 이는 부득이한 결과였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한성개잔의 책임으로부터 이홍장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 후, “수년 동안 한성에 행잔을 개설한 자가 화상 외에 일본인이 가장 많고 洋商의 점포도 날로 늘어나, 한성의 태반을 外客이 점거하게 되었다.”고 하여 조선의 피해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나아가 한성개잔을 방지할 경우 문제가 ‘叢生’할 것이고 ‘偏小한 도성’에 (많은 외국인과) 함께 할 수 없어 변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變通辦理해줄 것을 주문함과 아울러, “각국과의 조약에는 화상이 한성철잔을 단행할 경우 한성개잔 조항을 원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을 언급하여 한성철잔의 열쇠는 청조정부가 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⁶²⁾

하지만 원세개를 제치고 북양대신 이홍장과 직접 담판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전개한 ‘撤棧外交’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홍장과 의 면담에는 성공했지만⁶³⁾ 이홍장 역시 원세개와 같은 입장이었다. 金明圭는 “한성의 棧房에는 客이 주인보다 많아졌고 땅에는 租界의 畵分도 없고 貨物에는 卡釐의 징수도 없는, 각국 수도에 발생한 적이 없는

62) 『朝淸商民水陸章程 第4條 改訂 要請의 件』(고종27년 2월 2일), 『淸案』1, 653쪽.

63) 오함 위음, 『이조실록 중 중국관련사료』Ⅶ, 신학문사(영인본), 『고종27년(경인) 정월12일·윤2월9일』조, 5306쪽.

變例가 되고 말았다. 자그마한 一城에 남아날 塵房이 없을 지경이다. 본국 상민 중 손해를 보고 폐업하는 자가 열에 아홉인 상황이 되었다. 하루를 因循하게 되면 이는 永年の 폐단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여 한성철잔의 절박성을 호소했지만⁶⁴⁾ 이홍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홍장은 “한성개잔은 속국의 專例로서 (중략) 일본인이 균점을 요구했다 해도 조선정부는 堅詞로써 거절하여 문제를 예방해야 했다. 중국은 上國이고 일본은 與國이니 동일한 차원에서 논할 수 없다. 지금 日商이 華商보다 많다고 하는데, 화상이 철잔한다고 일상이 철잔할 것인가. 일본이 철잔하겠다고 먼저 明文으로 밝힌 후에야 나와 철잔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여 한성개잔 균점의 책임이 조선정부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日商이 큰 세력을 형성한 상황에서 화상의 일방적인 철잔은 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⁶⁵⁾ 김명규가 계속 철잔을 주장하자 이홍장은 “이번 소요는 귀국 조정이 시민을 선동한 결과가 아닌가. 이 점을 외국인들은 모두 알고 있다. 백성이 소요를 일으키면 조정은 이를 금지하는 법이거늘, 어찌 조정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것인가. 또 (철잔이 결정된다 하여도) 조선정부는 이전 비를 마련할 수 없으니 (철잔 논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수천 리의 땅에서 어찌 20萬元(이전비용)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통명스럽게 반박하고 있다.⁶⁶⁾

64) 『朝鮮駐津陪臣金明圭呈李鴻章片』(光緒15년12월1일), 『關係史料』제5권, 2696-2699쪽; 『在天津理事官金明圭韓廷ニ向ケ貴國方發電ノ真相ニ關シ報告ノ件』, 『附屬書: 別紙筆話寫』(10월 26일), 『日本外交文書』(第23卷), 184쪽.

65) 『李鴻章駁金明圭呈片』(光緒15년12월1일), 『關係史料』제5권, 2700-2701쪽; 『在天津理事官金明圭韓廷ニ向ケ貴國方發電ノ真相ニ關シ報告ノ件』, 『附屬書: 別紙筆話寫』(10월 26일), 『日本外交文書』(第23卷), 185쪽.

66) 『李鴻章駁金明圭呈片』(光緒15년12월1일), 『關係史料』제5권, 2701쪽; 『在天津理事官金明圭韓廷ニ向ケ貴國方發電ノ真相ニ關シ報告ノ件』, 『附屬書: 別紙筆話寫』(10월 26일), 『日本外交文書』(第23卷), 187쪽.

이로써 <장정> 제정 이래 한·중 관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한성철잔 문제는 청일전쟁 때까지 담보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여준 원세개·이홍장과 조선정부와의 알력은 한성 상인이 겪은 상권의 잠식과 결합하여 강렬한 反淸意識이 한성 내에서 표출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한성 시민의 반청의식은 주로 화상에 대한 방화와 살인 등으로 표출되었다.

Ⅲ. 漢城開棧의 ‘反作用’: 연쇄방화 사건의 발생

대략 청일전쟁 이전까지 조선정부와 청조의 在韓官僚 간에 주고 받은 문서를 정리해놓은 『淸案』(1)을 보면 화상이 운영하는 상점에 대한 방화사건이 자주 눈에 띈다. 예컨대 고종24년 10월 초에 발생한 三和興號等 4家の 火災와 고종25년 5월에 발생한 同興號 火災, 고종 26년 5월에 발생한 德興號 焚殺劫財 등이 그것이다. 훗수로 보아 화재사건이 ‘빈발’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화재의 형태와 발생시점 등에 있어서는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다. 위의 세 화재 사건의 개요를 정리해보자.

① 三和興號等 4家の 화재사건: 고종24년 10월 6일 南門大街 北邊에 위치한 三和興號에 새벽 1시경에 화재가 발생함. 불은 건물 외부에서 시작됨. 점원 3명이 사망함. 피해액은 1,000兩에 달함. 남문대가 남변에 자리잡은 裕發號와 南門 입구에 자리잡은 增順號·同和興號 역시 새벽 1시경에 화재가 발생함. 세 상점의 거리는 1리 남짓이었고, 화재 역시 상점 외부에서 시작됨.⁶⁷⁾

67) 『三和興號等 4家の 火災와 放火犯 捕獲 要請』(고종24년 10월 8일), 『淸案』1, 387-388쪽.

② 同興號 화재사건: 고종25년 5월 2일 새벽 2시 경 西門路의 북쪽에 위치한 잡화점 同興號에 화재가 발생함.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화물이 모두 피해를 입음. 화재는 역시 상점 외부에서 시작됨.⁶⁸⁾

③ 德興號 焚殺劫財사건: 鐘樓 西街路 남쪽에 위치한 德興號에 밤 10시 쯤 화재가 발생함. 점원 鄭耀는 상점 바다에 누워있었고 그의 몸에는 刀傷이 있었음. 현금 1,100元和 외상장부가 분실되었음(액수는 1,400元), 화물가격 6,000元, 합계 8,000여 元의 재산피해가 발생함.⁶⁹⁾

이상의 세 화재사건은 모두 ‘放火’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즉 부주의나 우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이다. 물론 ③ 德興號 焚殺劫財는 금품을 노린 강도와 이를 은폐하기 위한 화재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금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외상장부마저 도난당했다는 점에서 상점에 모종의 거래(특히 채무) 관계에 있던 개인(또는 집단)에 의해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방화사건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것 같다.

또한 ① 三和興號等 4家の 화재를 원세개에 보고한 辦理龍山通商事務 陳同晝는 연이어 일어난 4건의 화재가 모두 상점 외부에서 발화했다는 점, 또 한결같이 화상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근거로 특정한 이유(‘其中必有別情’)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화상들이 두려워 ‘安生立業’할 수 없는 형편임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의도적인 화재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⁷⁰⁾ 뿐만 아니라 三和興을 제외한 3家の 화재는 화재 발생의 정황으로 미루어 방화가 동시다

68) 『同興號 火災에 관한 照會』(고종25년 5월 6일), 『淸案』1, 452-453쪽.

69) 『德興號 焚殺劫財 賊犯의 迅速嚴拏에 관한 照會』(고종26년 5월 9일), 『淸案』1, 549-550쪽.

70) 『三和興號等 4家の 火災와 放火犯 捕獲 要請』(고종24년 10월 8일), 『淸案』1, 387쪽.

발적으로 일어났고, 따라서 이는 한두 명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조직적인 범죄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⁷¹⁾ 三和興의 실소유자인 王稼春의 稟請에 따르면 자신이 조선에서 생활한 3년 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보건대 대개 한성 시내는 야간의 鐘鳴을 신호로 하여 행인의 통행을 금지하고 街巷에는 兵役을 보내 과수하게 하는데, 南門과 같은 ‘緊要地區’에는 兵役이 더욱 많았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방화를 했다는 것은 결국 ‘通同作弊’가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⁷²⁾

② 同興號 화재사건에 대해서도 피해 상인인 王仙淵의 稟請에 따르면 “평소에 火燭을 조심히 다루어왔는데, 이번 화재는 바깥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 분명히 다른 특별한 연유가 있을 것(“其中必有別情”)”이라고 하여 삼화흥호 화재 때와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⁷³⁾ 동시에 “한성에는 본래 야간순찰을 행하는 병정이 있는데 흥도들이 이토록 제멋대로 행동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진압을 하지 못하여 화상들이 더욱 두려워한다.”면서 조선정부의 치안 미비를 힐책하고 나섰다.⁷⁴⁾

더구나 두 방화사건의 범인이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체포되지 않자 원세개는 조선정부에 범인의 체포와 순찰의 강화를 촉구하고⁷⁵⁾

71) 이 점에 대해서는 陳同書와 함께 사건을 조사한 外衙門 參議 鄭憲時 역시 동의하고 있다(『三和興號等 4家의 火災와 放火犯 捕獲 要請』(고종24년 10월 8일), 『清案』1, 387쪽).

72) 『三和興號 放火犯 逮捕 催促과 罹災民 救恤에 관한 照會』(고종24년 10월 23일), 『清案』1, 390쪽.

73) 『同興號 火災에 관한 照會』(고종25년 5월 6일), 452-453쪽. 원세개 역시 “누차에 걸쳐 화상만 이러한 재액을 당하고 있고 화재가 외부로부터 시작되었으니, 고의적인 방화임에 틀림없다.”고 단정하고 있다(『同興號 放火賊犯 迅速捕捉에 관한 照會』(고종25년 5월 12일), 『清案』1, 454-455쪽).

74) 『清商等 被火事의 嚴密巡査에 관한 回答』(고종25년 5월 17일), 『清案』1, 459쪽.

범인에 대한 현상금을 거는 등 범인 색출에 노력하는 한편,⁷⁶⁾ 방화사건으로 인한 화상의 피해 보상을 위한 조선정부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섬과 동시에⁷⁷⁾ 자구책을 강구하게 된다. 그 하나가 한성 시내에 산재한 화상들을 일정한 구역에 집단 거주케 하는 것이었다. 원세개는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색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역설하면서, 5월 20일부터 화상의 집중 거주지인 南門 일대와 東門 일대에 각각 巡差 5-6명을 고용하고 本署에서 巡員 1명을 파견하고 이들을 감독케 하여 盜·焚 사건의 방법을 맡기겠다고 조선정부에 통보했다.⁷⁸⁾

이와 동시에 방화 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화상의 ‘零星分處’에 있다고 판단한 원세개는 高宗26년 5월 화상들로 하여금 南門 및 東門

75) 『三和興號 放火犯 逮捕 催促과 罹災民 救恤에 관한 照會』(고종24년 10월 23일), 『淸案』1, 389-390쪽; 『三和興號 放火犯 迅速拿捕 要請』(고종24년 12월 5일), 『淸案』1, 404-405쪽; 『三和興等號 放火犯의 迅速拿捕 催促』(고종24년 12월 15일), 『淸案』1, 422쪽; 『三和興號 等處 賊犯의 迅速捕捉에 관한 再要請』(고종25년 4월 29일), 『淸案』1, 451-452쪽; 『同興號 放火賊犯 迅速捕捉에 관한 照會』(고종25년 5월 12일), 『淸案』1, 454-455쪽; 『三和興·德興 兩號 淸商 焚殺賊犯의 迅速捕捉에 관한 照會』(고종26년 6월 4일), 『淸案』1, 565쪽; 『德興號 焚殺劫財賊犯의 從嚴捕捉에 관한 照會』(고종26년 6월 12일), 『淸案』1, 567-568쪽; 『德興號 焚殺劫財 賊犯의 勒限捕捉에 관한 회답』(고종26년 6월 14일), 『淸案』1, 569-570쪽.

76) 『德興號 焚殺劫財 賊犯의 懸賞嚴査에 관한 照會』(고종26년 5월 10일), 『淸案』1, 552쪽; 『德興號 焚殺賊犯의 逮捕를 위한 懸賞金 增額과 各地軍民 曉諭에 관한 照會』(고종26년 5월 16일), 『淸案』1, 555-556쪽.

77) 『裕發號 放火犯 逮捕와 救恤 要請』(고종24년 10월 30일), 『淸案』1, 391-392쪽; 『同興號 放火賊犯의 查拏徵辦 및 燒失貨物의 追償에 관한 照會』(고종25년 5월 20일), 『淸案』1, 459-460쪽; 『王家椿 所營 三和興 放火犯에 대한 按律과 貨銀追償에 관한 照會』(고종25년 9월 4일), 『淸案』1, 484-485쪽; 『王家椿 所營 三和興 放火犯의 迅速徵究와 貨銀의 追賠 要請』(고종25년 9월 18일), 『淸案』1, 486-487쪽.

78) 『在漢淸商들의 巡察員 雇用に 의한 自衛防賊에의 協助要望에 관한 照會』(고종26년 5월 14일), 『淸案』1, 553-554쪽; 『在漢淸商들의 巡察員 雇用に 의한 自衛防賊에의 協助에 관한 回答』(고종26년 5월 19일), 『淸案』1, 557쪽; 『同上件에 관한 公文照覆 要望』(고종26년 5월 20일), 『淸案』1, 557-558쪽.

내의 二宮街 일대로 이주하여 ‘呼吸相通, 彼此援助’할 수 있도록 했다.⁷⁹⁾ 요컨대 원세개는 자위를 도모함과 동시에 화상 거주지를 일정한 구역에 한정하여 자위의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⁸⁰⁾

이상의 분석을 통해 고종24·25년에 일어난 3회의 방화사건의 개요와 사후 처리상황을 개괄했는데, 유효한 분석을 위한 충분한 사례가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적어도 『淸案』1에 기재된 화재사건은 고종24년, 즉 1887년 이후에 발생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1887년이라는 시점은 在韓 화상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 한성상인과의 사이에 상권을 둘러싼 각축이 심화되던 시점과 대략 맞아떨어지는 듯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성 거주 화상은 1884년에 356명(유동

79)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집값을 높이 부르자 집값에 대한 조·청 양국의 공동 조사를 통해 ‘평윤’한 가격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하고 있다(『南門內等處의 民屋을 淸商이 求買할 境遇의 價格平允에 관한 照會』(고종26년 5월 16일), 『淸案』1, 556쪽 및 『南門內等處의 民屋을 淸商이 求買할 境遇의 價格平允에 관한 照催』(고종26년 5월 23일), 『淸案』1, 558쪽).

80) 하지만 조선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던 듯하다. 조선정부는 범인의 색출은 물론 화상의 자위방적과 한성 순찰에 노력하겠음을 누차 밝혔지만(『(동·홍호 화재)同上件에 관한 回答』(고종25년 5월 12일), 『淸案』1, 455쪽; 『淸商等 被火事의 嚴密巡查에 관한 回答』(고종25년 5월 17일), 『淸案』1, 459쪽; 『在漢淸商들의 巡察員 雇用に 의한 自衛防賊에의 協助에 관한 回答』(고종26년 5월 19일), 『淸案』1, 557쪽), 원세개는 조선정부가 “(화재 사건을) 범상한 것으로 간주할 뿐 아니라 신속한 처리에도 노력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1) 과거에 발생한 두 차례의 방화사건의 범인을 10일 내에 체포하고 2) 조선에 거주하는 화상에 대한 분살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의 보장을 한다면, 동문·남문 방가 평윤에 대한 협조와 자위방적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在漢淸商의 自衛防賊 等事의 非協助에 대한 抗議札函』(고종26년 5월 27일), 『淸案』1, 562쪽). 원세개의 이 항의 서한에는 조선정부의 비협조에 대한 원세개의 비분이 잘 드러나는데, 6월3일에 보낸 서한에서도 원세개는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답장이 없으니, 귀 독판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焚殺 사건은 急要한 公件인데도 마냥 천연하고 신경쓰지 않으니, 귀서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여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在漢淸商의 兩次 焚殺事件 등에 관한 回答 促求』(고종26년 6월 3일), 『淸案』1, 564쪽).

인구 포함)에서 1885년에는 111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1888년 376명, 1889년 600명, 1891년 751명을 거쳐 1893년에는 1,254명으로까지 늘어나고 있는데,⁸¹⁾ 불완전한 통계이기는 하지만 화상의 증감 추세가 기본적으로 반영되었다고 간주한다면 1888년부터 재한 화상은 급증하는 추세에 있었다. 여기에 日商의 한성 진출까지 가세함으로써 한성 소재 조선상인의 상권 위축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⁸²⁾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조선정부는 고종22년과 고종24년을 비롯해 누차에 걸쳐 화상의 漢城撤棧과 용산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전술한 여러 원인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았고, 따라서 한성 시내 상권을 둘러싸고 화상과 조선상인 간에는 긴장국면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조선정부와 원세개간의 협의와 절충을 통해 한성개장·철잔 문제가 제도적인 해결에 도달할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게 되자 한성 상인들은 방화 등의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 화상의 ‘자발적인’ 철잔을 노렸던 것은 아닐까. 한성 상인, 특히 육의전 상인들이 조선정부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협상능력을 갖춘 존재였다고 본다면⁸³⁾ 한성 시내의 치안을

- 81) 林明德, 『袁世凱與朝鮮』, 199쪽의 표 <朝鮮各口外國商民總數比較表>에 근거.
- 82) 원세개는 용산 이전과 관련하여 한성 내 화상의 규모를 추산한 바 있다. 고종 27년 현재는 화상이 80호, 600명 이상에 달했고 또한 이들 화상의 총자산 역시 200만냥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 이전이 화상에 경제적 손실을 안겨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변모했다. 이에 대해 원세개는 중국의 이민 정책이 효과적이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화상의 숫자가 급증했다고 자랑삼아 말하지만, 이러한 화상 규모의 급증은 한성 내 상인들에게는 생존권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 袁世凱稟報朝鮮閉市定形』(光緒16년 2월 17일), 『關係史料』 제5권, 2734-2736쪽).
- 83) 한성개장이 이루어진 후 육의전의 이익이 예전만 같지 못해져서 조선정부는 한성철잔과 용산이전을 통해 육의전의 상권독점을 통한 이윤 증대와 이에 기반한 禮貢 증대를 피하기 위해 한성철잔을 지속적으로 도모한 것이라고 본 당초의 분석에 근거한다면(『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 奉(淸摺)(光緒16년 1월~2월), 『關係史料』 제5권, 2737-2738쪽), 조선정부가 한성 소재 조선상인의 상권 위축을 좌시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전술한 고종27년 초의 조선상인의 철시 역시 조선정부와 육의전 상인간의 일종의 ‘공생’ 관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

담당하는 관헌의 ‘암묵적 승인’ 하에 조직적인 연쇄 방화에 나섰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은 사후 보상 및 처리에 대한 조선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⁸⁴⁾

결론

고종19년(1882)에 제정된 <장정>은 조선과 중국의 ‘특수한’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으로서 만들어졌고 이는 청일전쟁 이전 조선의 외교를 직·간접적으로 제약했다는 점에서 ‘장정체제’라고 부를 만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장정>은 그 전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선과 청조에만 적용되는 ‘專條’로서 성립되었고, 따라서 조선과 중국에만 적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다. 서구 열강

다. 일본공사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성개잔으로 인해 최대의 피해를 입은 것은 육의전 상인이었는데, 왕가에 大喪이 있을 경우 한성의 육의전 상인들에게 ‘특종의 세금’을 부과하여 國喪 비용에 충당했던 통례가 있고, 한성 상인들은 고종 27년 초 조선의 趙大妃의 병세 악화를 계기로 國喪費 불납을 무기로 삼아 조선 정부에 한성칠잔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京城城內ノ韓商政府ニ日清兩國商民ノ撤棧ヲ迫リ督辦ヨリ追テ沙汰スベク面諭中ナル旨報告ノ件』(명치23년 1월 30일), 160쪽). 당소의 역시 유사한 분석을 행하고 있다(『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 附(淸摺)(光緒16년1월~2월), 『關係史料』제5권, 2738쪽).

- 84) 『三和興號 燒死 3人의 恤銀給與에 대한 謝意』(고종24년 12월 2일), 『淸案』1, 397쪽. 피해 보상 역시 삼화흥호 화재에 대해서만 보상이 일부 이루어졌을 뿐 동흥호와 덕흥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원세개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同興號 放火賊犯의 査拏徵辦 및 燒失貨物의 追償에 관한 照會』(고종25년 5월 20일), 『淸案』1, 459-460쪽; 『王家椿 所營 三和興 放火犯에 대한 按律과 貨銀追償에 관한 照會』(고종25년 9월 4일), 『淸案』1, 484-485쪽; 『王家椿 所營 三和興 放火犯의 迅速徵究와 貨銀의 追賠 要請』(고종25년 9월 18일), 『淸案』1, 486-487쪽; 『三和興等號 淸商 焚殺賊犯의 嚴緝 및 貨本 賠償에 관한 照會』(고종26년 11월 10일), 『淸案』1, 633-634쪽; 『淸國商人 三和興號 等の 被害補償 促求의 件』(고종26년 1월 12일), 『淸案』1, 651-652쪽)) 실제 피해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은 조선과의 조약 체결 시 예외 없이 최혜국대우 조항을 명문화한 후 <장정> 내에서 열강 각국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은 최혜국대우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여 관철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漢城開棧인데, 이로써 조선은 列國에의 ‘首都의 開放’이라는 미증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한성이 열국 상인에 개방됨으로써 한성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조선상인(특히 六矣廬 상인)의 반발을 초래하게 되자 조선정부는 1885년부터 漢城撤棧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지만 청조의 비협조와 조선정부의 재정적 무능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고, 한때 조선정부에 정치적 위기까지 촉발하는 일인이 되기도 했다. 한성개잔으로 인해 특히 華商의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한성 시민의 화상에 대한 반감은 점차 고조되었고, 이러한 잠재적인 反淸意識은 화상 상점에 대한 연쇄적인 방화사건으로 표면화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반청의식이 청일전쟁 이후 더욱 노골화되고 빈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연구가 잘 밝히고 있다.⁸⁵⁾

다만 본고의 관심사와 관련하여 부언하자면, 1895년이 근대 한중 관계사에 있어서 중요한 획기로서의 의미는 인정하되 1895년 이후 조선사회의 중국(문명)에 대한 ‘대등’(또는 앙드레 슈미드의 표현에 따르면 ‘강등’) 의식은 1895년을 계기로 ‘갑작스럽게’ 분출한 것이라기보다는 1882년 <장정> 체결 이래 청조의 조선정부에 대한 무리한 개입과 간섭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1882년 이래 형성된 조선사회의 잠재적인 반청의식은 <장정> 체결을 계기로 조선 문제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그러면서도 (예컨대 한성철잔의 예에서 보듯이)

85) 대표적으로 권석봉, 『청말 대조선정책사 연구』, 일조각, 1986을 들 수 있다.

조선정부의 절박한 문제의 해결에는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했던 청조의 다소 서투른 외교 전략의 산물이었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할 점 중의 하나일 것이다.

주제어 : 한성개간(漢城開棧), 한성철간(漢城撤棧), 화상(華商),
한중관계(韓中關係), 반청의식(反淸意識), <마포장정>

(논문투고: 2011.6.13/ 논문심사완료: 2011.6.23/ 논문게재 확정일: 2011.6.24)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구한국외교문서편찬위원회 편, 『淸案』
1,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0
- 권석봉, 『청말 대조선정책사 연구』, 일조각, 1986
- 권혁수, 『19세기말 한중관계사 연구』, 백산자료원, 2000
- 김정기, 『대원군 납치와 반청의식의 형성(1882~1894)』, 『한국사론』
제19집, 1988
- 김중원,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에 대하여』, 『역사학보』 제32집, 1966
- 테니 지음, 신복룡·최수근 역주, 『청한론(외)』(한말외국인기록8), 집
문당, 1999
- 문명기, 『재정사의 각도에서 다시 보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1882)』, 『역사문화연구』 제30집, 2008
- 양드레 슈미트 지음, 정영울 옮김,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휴머니스트, 2007
- 윤해동, 『지배와 자치 - 식민지기 촌락의 삼국면구조』, 역사비평사, 2006
- 이양자, 『조선에서의 원세개』, 신지서원, 2002
-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金允植全集』, 亞細亞文化社, 1980
- 吳晗 編, 『朝鮮王朝實錄抄 中國史料』 VII, 경인문화사(영인본), 1989
- 王明星, 『韓國近代外交與中國(1861-1910)』,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
- 林明德, 『袁世凱與朝鮮』,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60
-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4·5권, 경인
문화사(영인본), 1989
- 日本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第23卷), 嚴南堂書店, 1993

Sino-Korean Conflict over the Opening of Seoul in the 1880s and Its Historical Connotations

Moon, Myung-ki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the meaning of the change of Sino-Korean relations in the 1880s, especially focusing on the connotation of the opening of Seoul.

Western powers like Great Britain, Germany and Japan, who successively established treaty with Korea, also insisted that they have the equal right for the opening of Seoul, based on the most privileged clause. As a result, Seoul was opened to every country for communications and commerce, which was very unusual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only to bear various problems for Seoul.

First, the Korean merchants in Seoul had to suffer from the loss in their profit, which resulted in reduction of revenues for the Choseon government.

Second, the opening of Seoul and Incheon at the same time offended the status of Han River and resulted in the conclusion of Mapo Regulation. Due to the influx of foreign goods and merchants, Seoul's stability was increasingly threatened and it resulted in serial arsons (presumably) by Korean merchants.

Finally, the problems that the regulation on the opening of Seoul induced anti-Chinese sentiment among Seoul citizens, and this led to everyday attacks on Chinese merchants in Seoul. In this sense, opening of Seoul was one of the worst byproduct of the rules which was forced on Korea by the Chinese government, which had claimed suzerainty without capacity to protect Korea.

Key Words : Opening and Closing of Seoul, Chinese Merchant, Sino-Korean Relationship, Anti-Chinese Consciousness, <Mapo Regulation>